

의안번호	2207000
의 퇴 인	문대림의원
회 답 일	2025. 1. 8.
추계번호	24B631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제2항 신설 (금융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u>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u>	재량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조제2항 신설 (금융지원 등)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1.

2. 상세 사유

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사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 및 지원정책 수행중

- **(농촌융복합산업)**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인증을 받은 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총 2,525개소('24.12.31 기준)

※ [참고자료 1]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사업 개요 참고

[표 1]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 예산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요 내용	2023	2024	2025
농촌경제활성화지원 (4130-300)				
• 농촌융복합 혁신 거점 조성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및 지 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구)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인프라 조성, 신상품·서비스 개발 및 컨설팅, 공동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 • (네트워크)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중심으로 시·군 내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운영 지원('25년 사업폐지) • (혁신벨트) 지역 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농자재, 생산, 식품, 관광 등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원료 조달, 제조·가공, 공동 유통·판매, 관광시설 등의 공동이용시설 및 네트워크 협업 지원('25년 신규사업)	6,300	3,150	4,800
- 인증경영체(소프 트웨어) 지원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컨설팅·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6,930	3,464	4,007
•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전문기관 운 영				
- 지원 전문기관 통 합 운영	농촌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모니터링 등 관리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및 도농교류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3,707	3,101	3,451
농업자금이차보전 (1038-301)				
•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촌융복합산업자 금)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 대상 운영 및 시설자금을 저리(고정 2.0% 또는 변동)으로 융자 지원(연간 총 150억원 한도)	1,071	1,355	1,63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나. 금융지원 등—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안 제25조제2항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 및 에너지 등의 시장가격, 사업자당 지원단가 및 지원물량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 및 데이터 등이 필요함

$$\begin{aligned}\circ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경영 부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원비용})_{i,t} \\ &= \sum_{i,t} (\text{주요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지원비용})_{i,t} \\ &= \sum_{i,t} (\text{사업자 수} \times \text{주요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지원단가} \\ &\quad \times \text{주요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지원물량})_{i,t}\end{aligned}$$

— 이때 t 는 추계기간, i 는 주요 원자재 및 에너지 등(유류, 전기, 비료, 사료 등)

□ 그런데 향후 공급망 위험 및 국제 에너지 가격 급상승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 발생 여부, 주요 원자재 및 에너지 등의 시장가격, 지원단가 및 지원물량,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 [참고자료 2] 농업경영체에 대한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등 지원 현황,
[참고자료 3] 농사용 전력판매단가 참고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제도

- **(요건)** ①대상 주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②사업장 입지(농촌 소재), ③주원료* 생산지(국산 100%, 지역산** 50% 이상), ④평균 매출액(5개년 농가소득(44백만원) 이상)
 - * 1차 산업(농업)은 반드시 포함하며 자가생산·계약재배 등을 통해 조달 가능
 - ** 사업장 소재 시·도 기준, 단, 타 시·도에 접해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지역산으로 간주
- **(기한)** 3년
 - * 기한 경과 시 갱신 가능
- **(현황)** 총 2,525개소('24.12.31 기준)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2,525	230	247	177	257	400	415	287	261	171	39	41

□ 주요 지원정책

- **(판로개척)** 지역 농협 및 마트,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내전용 판매관(83개소) 운영,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등 민간 판매플랫폼 입점 및 주요 시기별 판촉전 진행
- **(컨설팅)** 일반(단순 애로사항), 제품(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보육(경영진단, 사업계획)으로 구분하여 최대 12개월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운영
- **(자금지원)** 운영(3억원), 시설(20억원) 자금 저리(고정 2.0% 또는 변동) 융자 -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내 농촌융복합사업자 대상 연간 150억 규모 할당
- **(민간투자)** 창업 초기(7년 미만) 사업자 대상 전문 액셀러레이터(2개소) 매칭을 통한 보육·투자 유치 촉진, 민간투자 기반 1:1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5억원)

- **(입지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한하여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 －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사업 영위 조건을 삭제하고('24.5), 건축뿐만 아니라 용도변경까지 허용('24.7)
- **(농지이용)** 농업보호구역 내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포함

[참고자료 2] 농업경영체에 대한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등 지원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개요	법적근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60·377)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인상차액의 80%)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3733·329)	축산농가가 외상구매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리의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정책의 강구)
농업자금이차보전 (1038·301)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3031·305 / 306)	농업용 면세유,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규모 시설원예농가의 난방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지원 예산: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필수농자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60·377)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가격상승분의 80%) 지원 *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	180,099	100,000	28,815	—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3733·329) ·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345,000	355,000	355,000	300,000	300,000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농업자금이자보전(1038·301)						
	· 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	10,878	34,694	31,730	34,163
	· 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	—	14,384	20,834	31,335
농업에너지 비용(유류비)	시설농가유가보조금 한시지원 (3031·305/306) · 시설농가 면세유 유 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경 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 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시 적('22.10~12)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 지 원 추진 · 지원단가: 월별 ('22.10~12월)·유종별 평균가격-기준가격 ('22년 5월 유종별 평균 가 격의 88.5%) × 50%(국 고보조율)	—	15,118	—	6,97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한시적인 유류·전기·가스 등 에너지 관련 지원 사례

- 유류: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22.10~12) 난방비 지원 추진

- 사업명: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 지원예산: '22년 15,118백만원 중 9,560백만원 집행
- 지원단가: (월별('22.10~12월)·유종별 평균가격-기준가격('22년 5월 유종별 평균 가격의 88.5%)) × 50%(국고보조율)

※ '24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972백만원은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 불용

- 전기·가스: 해당없음

□ 농업용 면세유 지원현황

※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 제도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개요>

- 목적: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용 유류 구입가격에 포함된 모든 세액에 대해 면세 적용 ('86.3.1.~)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면제 세금(5종): 교통세·소비세·교육세·자동차세·부가세
- 면제 유종(6종):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윤활유, LPG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트랙터·콤바인 등 42개 기종

<최근 5년간 농업용 면세유 제도에 따른 면세액 현황: 2020~2024년>

구분	연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윤활유	LPG	합계 (kl/백만원)
공급량 (kl)	'20	85,299	843,127	442,469	29,713	259	11,726	1,412,593
	'21	87,015	852,466	439,787	28,902	218	14,053	1,422,441
	'22	87,284	860,222	422,408	30,461	200	15,211	1,415,786
	'23	86,769	847,081	363,843	28,611	187	14,034	1,340,525
	'24	87,796	851,692	340,474	16,348	174	15,574	1,312,058
면세액 (백만원)	'20	74,568	540,509	63,833	2,621	125	1,298	682,954
	'21	75,972	546,705	80,165	2,714	115	1,717	707,388
	'22	59,596	462,968	83,894	3,809	117	2,315	612,699
	'23	62,050	409,323	71,780	3,679	117	2,131	549,080
	'24	65,330	432,911	64,483	2,012	112	2,302	567,1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3] 농사용 전력판매단가

(한국전력공사)²⁾

□ 농사용 전력판매단가

-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기사업법」 제16조,³⁾ 한국전력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에서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⁴⁾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농사용전력은 다른 계약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 계약종별: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계약종별 전력판매단가 추이: 2020~2024년>

(단위: 원/kWh)

연·월 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합계
2020	107.89	131.60	103.99	107.35	48.45	114.35	67.03	109.80
2021	109.16	128.47	101.69	105.48	45.95	112.97	65.66	108.11
2022	121.32	139.10	111.53	118.66	56.89	124.53	74.26	120.51
2023	149.75	169.46	138.83	153.71	75.10	152.70	101.85	152.80
2024*	158.08	171.88	143.11	163.94	82.11	160.90	107.63	160.70

주: *) '24.1~10월 기준

자료: 1. 한국전력공사, 「2023년 한국전력통계」, 제93호, 2024.5.31., 146쪽에서 발췌·정리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지식센터 > 전기자료 > 전력통계 > 한국전력통계)
2.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024년 수치)

2) 한국전력공사, 「2023년 한국전력통계」, 제93호, 2024.5.31.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지식센터 > 전기자료 > 전력통계 > 한국전력통계)

3)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2024.10.24.>

제55조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60조 (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排水)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나.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이하 생략)

<2025년 농사용전력 전기요금표>

(2025년 1월 1일 시행)

구분		기본요금(원/kW)	전력량 요금(원/kWh)	
갑		360	45.7	
을	저압	1,150	63.3	
	고압(A,B)	1,210	여름철(6~8월)	66.0
			봄·가을철 (3~5, 9~10월)	64.0
			겨울철(11~2월)	66.0

- 주: 1.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 및 유인용 전등
- ※ '12.11.1이후 기존 농사용(을·병)→농사용(병) 통합 후 농사용(을)로 명칭변경
- 자료: 한전ON > 전기요금 전기요금표 > 한글 전기요금표 > 농사용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5.jsp>>